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 개정 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운 용 지 원 실 장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기금운용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인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과 수당 지급 관련 사항(안 제44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위원회 간사 및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담당자: 운영기획부 진현경, 전화번호: 063-711-01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5층 운영기획부
- (이메일) jhk1119@nps.or.kr
- (팩 스) 063-900-3480

붙 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으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책임실장이 된다.

③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정 제36조의3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운영한다.

1. 지배구조개선 관련 분과

2. 의결권행사 관련 분과

3. 스투어드십행사 관련 분과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운영분과에 분과를 담당하는 분과별 위원장을 지명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⑥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토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분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제44조의3(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책임실장이 된다.

③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정 제36조의 3제4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운영한다.

1. 지배구조개선 관련 분과
2. 의결권행사 관련 분과
3. 스튜어드십행사 관련 분과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운영분과에 분과를 담당하는 분과별 위원장을 지명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⑥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토의·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분과의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